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82

발의연월일: 2020. 8. 11.

발 의 자 : 김영배·정성호·박영순

박광온 · 김철민 · 황 희

박 정・이동주・윤미향

이용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의경우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일률적인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량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6항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 지선을 말한다)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 하여 야 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제6 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		
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		
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	
<u>에는</u>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	<u>행하려고 하는 때에는</u>	
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	
	관 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
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
1항·제2항·제5항, <u>제27조제1항</u> ,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
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섀	략)
т.	⊿.	(' ()	コノ

④ (생 략)

③
<u>제27조</u>
<u>제1항·제6항</u>
<u>.</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